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075 발의연월일: 2022. 8. 30.

발 의 자:김원이ㆍ기동민ㆍ박상혁

송갑석 • 신정훈 • 우원식

이장섭 · 조오섭 · 최혜영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지원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 몰제로, 향후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보장성 후퇴 등의 우려가 제기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 임.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은 최근 담배부담금 수입증가 둔화 등 현실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것 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

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또한 본칙에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참고사항

이 법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70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전년도 보험료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25조의2(기금사용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제108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금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수 없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 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 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삭 제></u>
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 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108조제4	

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